

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2일(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(Durations) 경우 6시간)
신청인	상호 (법인명)	성명 (대표자)	국적		
	주소				
	(소재지) (전화:)				
항공기 등록부호·형식 및 식별 부호					
운항의 경로[기항지(寄航地)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] 및 일시					
이륙·착륙하려는 국내 비행장등의 명칭·위치 및 그 일시					
운항의 목적					
운항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					
여객의 성명·국적 및 여행의 목적					
화물의 명세		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항공청장

귀하

유의사항

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
-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
- 환자의 이송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선람·검토	→	결재	→	통지서수령
신청인		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	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	지방항공청 (항공기운항 담당부서)		신청인